

제12장 투자

제1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¹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²이란 기업, 회사, 신탁, 파트너십, 1인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 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정의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 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 활동이란 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투자³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기업과 기업의 지점
- 2) 주식, 증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 3)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 4)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

¹ 지방정부에 의하여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는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로 양해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점은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³ 투자는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로열티 및 수수료와 같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도 포함한다. 자산이 투자된 형태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5) 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금전청구권 및 이행 청구권
- 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정보 관련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 7)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그리고
- 8) 그 밖의 모든 유형 및 무형 자산,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모든 관련 재산권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그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에 개정된 또는 이후에 당사국 간 합의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12.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한다.
2. 각 당사국은 외국인 소유와 통제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국의 권리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한다.

제12.3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이 장의 발효일에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현행의 비합치조치가 있다면 그러한 비합치조치, 또는 그 개정이나 수정이 개정이나 수정 직전에 그 조치가 가진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개정이나 수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용된 적용대상투자에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하여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4조 최혜국 대우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 활동과 제12.2조제2항에 따른 투자의 허용과 관계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다음의 회원자격에 기인한 모든 특혜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통화동맹, 그러한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이르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협력

나.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을 촉진하는 모든 국제 협정이나 약정, 또는

다. 항공, 어업 및 구조를 포함한 해양문제와 관련한 모든 양자 및 다자 국제협정

3. 제1항에 언급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다른 국제협정상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대우의 최소기준⁵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⁴ 이 조의 목적상 “비당사국”이라는 용어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 의미에서의 어떠한 독자적 관세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⁵ 이 조는 부속서 12-가에 따라 해석된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⁶를 제공할 의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관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자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12.9조를 따른다.

6. 제4항은 제12.3조에 불합치하게 될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6조 법원에의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자의 권리를 추구 및 방어함에 있어서 모든 관할단계의 법원과 행정법원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그리고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12.7조 이행요건 금지

1.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고 이 장의 모든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⁶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판단은 적절한 증명에 기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적용대상 투자에 대하여 수출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이행요건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당사자이며 투자활동과 관련되거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 규정, 행정절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 및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의 정부는 그러한 법, 규정, 행정절차 및 행정판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이름과 주소가 공중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이 공표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 간에 합리적인 간격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안보, 환율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법 또는 규정과 공표 시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그 밖의 법 또는 규정은 예외로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존 양자 채널을 통하여, 이 장에 따라 후자의 당사국과 그 투자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의 당사국의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하여 후자의 당사국의 특정 질문에 답하고 후자의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에 대하여 공중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다음의 경우 비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그 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경우,

나. 그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

다. 그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 또는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제12.9조 수용 및 보상⁷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수용 또는 국유화하거나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어떠한 조치(이하 이 장에서 “수용”이라 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 나. 비차별적일 것
- 다. 국내법 및 국제표준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를 것, 그리고
- 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상할 것

2. 보상은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수용이 발생한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서 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응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는 수용이 공공연히 미리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3.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되고 수용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을 포함한다. 보상은 유효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일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관련 투자자의 당사국의 통화 및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

4. 제12.12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자의 사안 및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 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수용을 행하는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10조 송금⁸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⁹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⁷ 이 조는 부속서 12-가 및 12-나에 따라 해석된다.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2-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송금은 외환관리와 관련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관련 형식요건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마. 제12.5조제4항, 제12.5조제5항 및 제12.9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그리고
 -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일하는 당사국 국민의 소득 및 보수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 다. 형사범죄
 -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12.11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신의 어떠한 투자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불을 하는 경우 후자의 당사국은
- 가. 그러한 지불의 기초를 구성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가 전자의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 나. 전자의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따라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와 동등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신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권리가 개시되었다면, 투자자는 지불을 하는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기초하여 청구를 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 투자자는 제1항에 따라 대위변제 되지 아니한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3. 권리 또는 청구의 그러한 양도 및 그러한 지불의 송금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지급될 지불액에 대해서는 제12.5조, 제12.9조 그리고 제12.10조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12조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한쪽 당사국과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 그의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어떠한 의무의 주장되는 위반으로 인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이다.

2. 모든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라 한다)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이하 이 조에서 “분쟁 당사국”이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기 전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에 제출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다음을 명시한다.¹⁰

- 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장에 따른 의무
- 다. 투자분쟁의 사실에 관한 요약자료, 그리고
- 라. 청구하는 구제조치와 손해배상의 대략적 금액

3. 투자분쟁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회부된다.¹¹

- 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 이용 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중재
- 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 이용 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¹⁰ 서면 협의 요청서는 다음의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

- 가. 중국의 경우, 상무부 조약법률사, 그리고
- 나. 한국의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과

¹¹ 가호의 목적상, 이 항은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전심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 마. 분쟁 당사국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른 모든 중재

다만, 나호부터 마호까지 규정의 목적상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분쟁 당사국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2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하여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2) 적용 가능한 경우, 제7항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 각 당사국은 이로써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일단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중 하나에 회부하면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선택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이후 동일한 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다른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분쟁 당사국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할 모든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분쟁 당사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

7.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제2항에 따라 분쟁 당사국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은 해당 투자자에게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기 전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할 수 있다.

국내행정검토절차는 검토를 위한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그 4개월 후에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는 제3항에 규정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그 투자자는 제3항에 규정된 4개월의 협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검토를 위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¹²

8.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은 이 조에서 수정된 범위 외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를 규율한다.

9.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이하 이 조에서 “판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와 그의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하여 분쟁 당사국이 이 장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그리고

¹² 국내행정검토절차에서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도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규정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가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의 구제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두

- 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 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10. 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며 투자분쟁의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이 판정은 그러한 판정의 집행이 추구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있는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가 자신이 제1항에 언급된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 중 빠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

제12.13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2.3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투자가 전자의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특별형식요건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요건은 이 장과 합치하여야 하며, 이 장에 따른 후자의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전자의 당사국이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2.3조와 제12.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의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자의 당사국은 후자의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의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어떠한 공개로부터도 그러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14조 안보 예외

1. 제12.5조제4항의 규정을 제외한 이 장의 어떠한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

- 1) 전시 또는 무력충돌이나 그 밖의 그 당사국 내에서 또는 국제 관계에서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2) 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국내정책이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조치

나.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제12.5조제4항의 규정을 제외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2.15조 혜택의 부인¹³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대하여, 그 기업이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대하여 그 기업이 비당사국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고 그 기업이 후자의 당사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2.16조 환경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취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달리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12.17조 투자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¹³ 이 조의 목적상 “비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 의미에서 어떠한 독자적 관세 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및 검토
 - 나. 제12.3조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현행 비합치조치의 범위를 포함한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 그리고
 - 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로부터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그리고 매각 또는 그 밖의 투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장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이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논의될 사안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의 정부 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련 기관의 대표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4.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한다.
 5. 양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1회 소집한다.

제12.18조 서비스-투자 연계¹⁴

1. 이 협정의 제12.5조(대우의 최소기준), 제12.9조(수용 및 보상), 제12.10조(송금), 제12.11조(대위변제),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 그리고 부속서 12-가(국제관습법), 12-나(수용) 및 12-다(송금)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제12.5조(대우의 최소기준), 제12.9조(수용 및 보상), 제12.10조(송금), 제12.11조(대위변제), 제12.12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 제12.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제12.15조(혜택의 부인), 그리고 부속서 12-가(국제관습법), 12-나(수용) 및 12-다(송금)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9장(금융서비스)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2.19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접촉선

¹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12조는, 그러한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하여, 오로지 이 조에 언급된 조들에 대해서만 의무에 대한 주장된 위반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1. 투자 환경 개선 및 그 영역 내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신의 정부 행정 행위와 관련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가능한 최대한 설립, 청산, 투자 증진 활동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접촉선은
 - 가. 중국의 경우,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그 승계기관
3.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접촉선에 더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불만 및 애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 내 지방정부¹⁵의 수준에서 지방 접촉선을 유지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 해결) 그리고 제12.12조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¹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중국의 지방정부란 중앙정부 하에 있는 성(省) 정부를 말한다.

부속서 12-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2.5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2.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2-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2.9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1)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그러한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2)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 3) 그러한 행위가 그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성격 및 목적

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2-다 송금

1. 이 장,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9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양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마. 모든 규제 자산에 관하여 당사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한다.

바.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사. 물수적이지 아니하다.

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된다.

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 제12.3조 및 제8.4조(내국민 대우) 그리고 제12.4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차.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이 장,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9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로서 당사국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